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_ 02-522-7284 팩스 _ 02-522-7285
<http://minbyun.org> / e-mail : admin@minbyun.or.kr

응급처치 선거법

1. 근거법규

- ① 공직선거법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② 공직선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 ③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7호, 2012. 3. 2. 일부개정, 2012. 3. 2. 시행)

2. 안내

- ① 이 가이드북은 일반 시민, 즉 유권자가 선거 관련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그에 대한 제약 및 절차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 ② 이 가이드북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차적 참고자료로 기획되었기에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북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각 단원의 첫머리에는 허용 또는 금지되는 행위의 정의, 주체, 기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선관위 질의회신과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 ④ 공직선거법상 기본 개념의 경우 “1. 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에서 다루고 이후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목 차

1. 공직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6

- I. 누가 II. 무슨 목적으로
- III. 언제 IV. 종합

2. 우리 단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12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3. 현수막, 간판 등을 설치, 마스크 등 제작, 광고물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 20

-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 · 마스크 등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 녹음 ·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27

- 인쇄물 등의 배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광고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5.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광고를 신고 싶어요 34

- 방송 · 신문 · 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6. 선거 관련 기사를 배부하고 싶어요 36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7. 구내방송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어요 39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8. 연설회나 토론회를 하고 싶어요 40

-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9. 집회나 모임을 열수 있나요? 43

-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회의 모임
-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आय회
- 반상회
- 출판기념회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0. 행진이나 인사를 할 수 있나요? 48

- 무리지어 거리 행진하는 행위
- 무리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무리지어 구호 등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11. 호별방문을 하고 싶어요 50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2. 서명운동을 하고 싶어요 54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3.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요 56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
- 다른 사람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4. 정책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싶어요 63

- I. 간단히 알아보기

15. 서신·전보·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65

-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

- I. 간단히 알아보기 II.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70

- I.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II. 할 수 없는 행위



1. 공직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법률가들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규정체계가 중복되어 있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공직선거법이 각종 정치적 의사표현을 살피는 데 사용하는 “누가, 어떤 목적에서, 언제”라는 틀이 바로 그것입니다.

I. 누가?

“누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19세 미만의 자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아래와 같은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아래의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5. 공무원과 유사한 아래와 같은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상근 직원
-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상근 직원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상근 직원
- △ 「정당법」 제2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이들 단체 및 시·도조직 그리고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바로 위법하게 됩니다.

II. 무슨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행위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행위**, 위 2가지 목적이 없는 **일반적 의사표현**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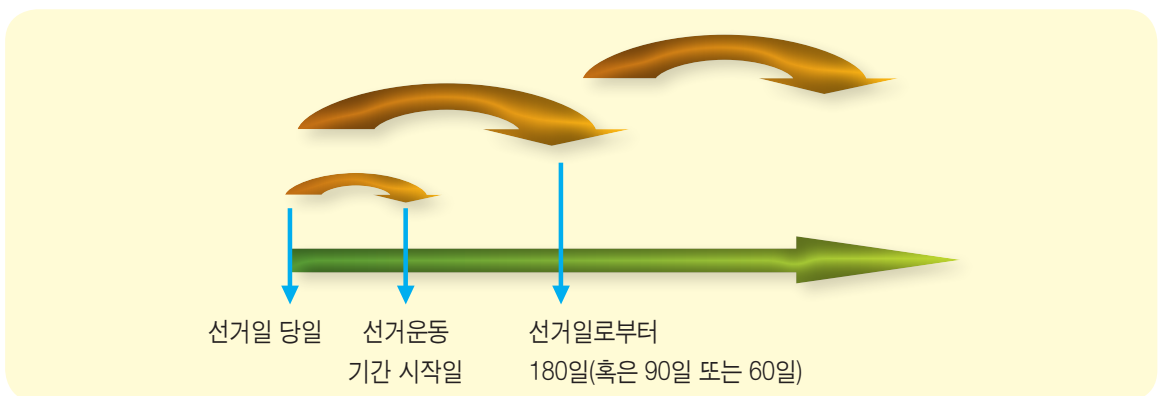
-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이기에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등 일반적 의사표현**은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행위자의 목적에 따라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라는 것이 ‘내심의 의사’이다 보니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의 구분(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와 일반적 의사표현의 구분(②)**이 선관위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II. 언제?

공직선거법은 똑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언제 행해졌는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이 구분하고 있는 시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선거일로부터 가까운 시기부터 보면 **1)선거일 당일, 2)선거운동기간, 3)선거일 전 180일(혹은 90일 또는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및 4) 선거일 전 180일(혹은 90일 또는 60일)부터 그 이전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 참고로 선거운동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IV. 종합

공직선거법이 위 개념들을 이용하여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 문	누 가	언 제	무슨목적으로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92(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선거운동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94(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95(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선거에 관한 기사, 통상방법외의 배부	
97(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선거운동	
98(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선거기간 중		
99(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100(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101(타연설회 등의 금지)				
103③(각종집회 등의 제한)			선거운동	
105(행렬 등의 금지)				
106(호별방문의 제한)				
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09(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110(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선거운동	

2. 우리 단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1. 단체의 선거운동

기관이나 단체도 원칙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 및 위 두 목적이 없는 단순한 의견표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시기나 방법 등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열거된 기관 및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②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2. 우리 단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③ 향우회 · 증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④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 ⑤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⑥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⑦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2. 사조직 설립 금지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이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 구체적으로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관련 활동의 범위

가. 단체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 기간 중이거나 그 이전이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의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으로 소속회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5. 31).

-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우리 단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2. 19).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그 내용을 기관지에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에 의해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또는 당해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이를 게재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6. 9).

-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하거나 철회하여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공문으로 건의·요구하는 행위나 그러한 건의·요구가 채택된 사실을 구성원에게 통지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0. 2).

● 금지되는 행위

-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 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 6511 판결).

- 기관지나 내부분서 등의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그 기관지·내부분서·게시판 등의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이 아닌)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우리 단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6. 3).

- 단체가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의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이 아닌) 별도의 유인물이나 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별도의 유인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때에는 그 행위 시기나 방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제103조 또는 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6. 3).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단체의 정책방향을 선거공약 등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건의하거나 건의한 사실과 채택된 경우에 그 채택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의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체가 낙선대상자 등을 선정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언론보도의 차원을 넘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2.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용되는 모임

-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치인 팬클럽은 설립이 가능하며, 그 속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치인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1. 2).

- 기존에 존재하던 조직이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방하게 활동하는 것, 예컨대 선거와 무관하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모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거나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행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합니다)는 금지됩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9. 7. 21).

②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공모하여 2003. 9.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서울 ○○구 관내 3개동 등지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선거구 주민 등으로 하여금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668명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2명 등 710명을 모집하여 산악회를 조직하고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한 것은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 4. 선고 2004도7362 판결).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등은 불문하고) 결성된 팬클럽은 금지됩니다.

3. 현수막, 간판 등을 설치, 마스코트 등을 제작, 광고물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3. 현수막, 간판, 마스크트 등을 설치 및 배부하고 싶어요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크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이전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일 전 180일 ~그 이전
단순한 의사표현을 할 목적	허용	허용	허용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금지	금지	금지	허용
선거운동을 할 목적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주의할 것은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 으로 보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의 정도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대상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공직선거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현수막, 간판, 마스크트 등을 설치 및 배부하고 싶어요

● 공직선거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 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당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 정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공선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명으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크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직무상·업무상의 행위(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 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 선거사무소를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 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3. 현수막, 간판, 마스크트 등을 설치 및 배부하고 싶어요

허용된 구체적 사례

- 통상적인 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현수막이나 영업행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행사명·주최자명 등 행사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7. 7). 다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무방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2. 4).

-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하거나 반대해 온 특정 정책이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나 반대활동이 전부 규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사안을 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현수막, 간판, 마스크트 등을 설치 및 배부하고 싶어요

- 대법원은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이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 9243 판결).
- 대법원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과 간사인 피고인들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인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6.24. 선고 2011도3447 판결).

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쇄물 등의 배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광고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제93조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 인쇄물의 배부·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이전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일 전 180일 ~그 이전
단순한 의사표현을 할 목적	허용	허용	허용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금지	금지	금지	허용
선거운동을 할 목적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광고 (제93조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행위의 목적 구분 없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처벌의 정도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대상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 공직선거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행위의 경우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정의는 제23쪽 참조

●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행위의 경우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허용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의례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규임용 교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인사문을 당해 단체의 대표자의 명의(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자)로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2. 13).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방법에 따른 경우

- 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부가함이 없이 각 정당에 소속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원을 하고 그 청원에 대한 각 정당의 수용내용을 단체의 기관지를 통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는 행위는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1. 22).
-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사실이나 그 후보자를 위하여 할 자원봉사활동 등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25).

●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게 다루거나 종전의 정당활동 및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의 활동

-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1. 20).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협회지에 게재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9. 14).

● 금지된 사례

●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 외의 내용이 들어간 경우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7. 7).
- 단체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면의 출마예정자 단일후보를 결정키 위해 ○○면의 전세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14).

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바를 벗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한다든지 후보자의 공약 및 활동 사항들을 담거나 허위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자선음악회의 포스터, 전단지를 첨부·배부 또는 게시하면 안 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1. 28).
- 친목단체의 회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소속회원)의 학력·경력 등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해서는 안 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9).

- 특정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거나 종전의 정당활동 및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단체가 단체의 회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대담 또는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회원에게 배부해서는 안 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5. 1).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광고를 싣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4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광고를 신고 싶어요.

☉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시작일 이전
단순한 의사표현을 할 목적	허용	허용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금지	허용	허용
선거운동을 할 목적	금지	금지	금지

다만, 유권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광고하는지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2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12. 21.)("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부분 참조).

☉ 처벌의 정도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대상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6. 선거 관련 기사를 배부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5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9>

☉ 대상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목적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신문·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95조 제1항). 여기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다는 것”, 즉 선거법이 금지하는 방식의 간행물 배부는 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이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말합니다(2000도3877판결).

☉ 처벌의 정도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대상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6. 선거 관련 기사를 배부하고 싶어요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 금지되는 구체적인 사례

●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간행물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형식의 간행물 배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07. 5. 5.에 개최된 이 사건 걷기대회에서 시흥시장인 공소외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유가지인 권 5 월호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흥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행위는 걷기대회의 성공과 ‘권’ 지에 대한 홍보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8.11. 선고 2008도4492 판결).



7. 구내방송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9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어떤 목적에서든 대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처벌의 정도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대상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8. 연설회나 토론회를 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
-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1조, 102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2010.1.25>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이전~
단순한 의사표현을 할 목적	허용	허용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금지	금지	허용
선거운동을 할 목적	금지	금지	금지

위와 같은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TV, 인터넷 등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장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8. 연설회나 토론회를 하고 싶어요

● 처벌의 정도

만약 금지된 연설회 등을 하게 되면 법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자목, 차목)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 허용된 사례

● 공직선거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담 · 토론회(제81조)
- 언론기관 주최 대담 · 토론회(제82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 · 정책토론회(제82조의 2, 3)

● 대담토론회 후 결과 평가 및 정책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상 지지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천명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5. 23)

9. 집회나 모임을 열수 있나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회의 모임
-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 반상회
- 출판기념회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3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2010.1.25>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회의 모임 개최 금지(법 제103조 제2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반상회는 제4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들의 위원회를 말합니다.

🌈 향우회 등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법 제103조 제3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 향우회 등의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9. 집회나 모임을 열수 있나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이전~
단순한 의사표현을 할 목적	허용	허용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금지	금지	허용
선거운동을 할 목적	금지	금지	금지

● 반상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제4항)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제5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어떤 목적에서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처벌의 정도

- 법 제10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운동단체 모임이나 주민자치회의를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 법 제10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향우회, 반상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 허용된 사례

● 특정 후보가 일부러 초대되지 않거나, 특정후보에 대한 선전활동이 없는 종친회

- 선거기간 중에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 중이라도 종친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 체육대회

- 동문회 체육대회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 중이라도 동문회가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 중 허용되는 동창회

-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경우, 총 회원 수나 당일 참가인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가져왔던 모임으로서 그 목적이 선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개최행위가

9. 집회나 모임을 열수 있나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음(대구지방법원 2007. 9.12. 선고 2007고합343 판결)

● 선거기간 중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즉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선전하거나 후보를 초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사례

- 육영재단이 ‘육영수 여사 탄신기념축제’ 를 선거기간 중 여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종전부터 개최하여 온 통상의 예에 따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귀문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2. 9.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기간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교육자 대표회의’ 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선관위는 “단체 본연의 활동목적을 위하여 교원의 의사를 청취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91조, 제101조 또는 제103조 등 관련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 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2.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0. 행진이나 인사를 할 수 있나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리지어 거리 행진하는 행위
- 무리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무리지어 구호 등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5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1.25>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는 언제든지 대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

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11. 호별방문을 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6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호별방문의 목적	금지시기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시기불문하고 금지
입당권유를 위한 호별방문	선거운동기간에만 금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	선거운동기간에만 금지

여기서 호별방문이라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를 연속적으로 두 곳 이상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처벌의 정도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대상행위를 직접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 공직선거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허용된 구체적 사례

시간 간격이 있는 두 집 이상의 방문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두 집을 방문한 시기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940).

🌱 금지된 구체적 사례

호별방문에서의 호는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되므로 **병원 입원실과 같이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구고법 2007.3.15. 선고 2007노38 판결),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 2315 판결 등 참조).



12. 서명운동을 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7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제6쪽 참조)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대상행위는 금지됩니다.

처벌의 정도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대상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허용된 사례

특정인의 복권만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하는 것

단순히 특정인의 복권만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하거나 서명운동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안 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1. 9. 2.). 즉 특정인의 복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면서 다른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다른 후보자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특정인의 복권 서명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3.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
- 다른 사람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요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9>

⑦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9>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13.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요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⑧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12.2.29>

⑨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9>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여론조사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 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 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자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 이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미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처벌의 정도

처벌의 정도에서 만약 위의 금지된 경우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금지된 사례

-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 특정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를 게시하는 것, 페이스북, 트위터 사용자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물을 게시하고 이를 리트윗, 공유 등의 방식을 통해 퍼나르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등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2012.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는 누구나 설문결과를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귀문의 설문방식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요

이 외의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필요시마다 실시하면서 현판에 조사자인 의원의 직·성명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알릴 경우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2010.12.21. 법규안내센터).

허용된 사례

-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하루나 이틀 전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선거일 전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여론조사결과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언론기관이 선거일 전 6일전에 같은 법 제108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그 출처만을 밝혀(이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때에는 같은 법조항에 따라 함께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1.03.28 법규안내센터).

14. 정책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14. 정책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싶어요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기관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든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나 2) 후보자 등 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118조의2 제2항).

처벌의 정도

법 제10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하목).

15. 서신·전보·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I. 간단히 알아 보기

● 대상행위

이 장에서 살펴볼 행위(본 장에서 “대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

● 찾아볼 공직선거법 조문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9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 ② 제60조의3 제1항 제6호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2.2.29>
-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 대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

누구든지 어떤 목적에서든지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간	금지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방법(아래 참조)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에서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 4)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

15. 서신·전보·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시까지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법 제109조 제2항).

전자우편, 문자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의 제한

①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목적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아래 사항 명시하여야 합니다(법 제82조의 5, 규칙 제45조의 4).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아래와 같은 방법은 금지됩니다.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처벌의 정도

법 제82조의 5의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법 제255조 제4항).

II. 허용 · 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행위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나 e-mail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1. 10. 16).
-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 통화시 수신자의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판결 2005도5574).
-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특정번호(예 = **123)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문자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5. 10. 13).
- 정당 또는 후보자 홍보내용의 전화통화 연결음 사용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28).

15. 서신·전보·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 ▶ 전화 통화 연결음은 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로고송을 전화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더라도 “선거운동정보” 임을 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28).

● 할 수 없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방법

송화자가 직접 통화함이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것(선거사무원과 직접 통화하기 전에 후보자의 지지호소에 대한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함)은 할 수 없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1).

- 이미지 파일 전송

문자가 아닌 내용의 이미지 파일이나 당 로고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29).

- 통화 중 동의 없이 음성메시지 전송

상담원이 유권자와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메시지나 로고송을 들려주는 것은 법 제100조 및 제109조에 위반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5. 10).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허용·금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대량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함.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자는 다른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함.

- 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②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돌려보기 등)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 등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거나 돌려보기 등을 하는 행위

● 선거일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후보를 찍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됨.

● 성명 등의 허위표시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에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음.

●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등 위반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 선거운동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그든지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식·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불법 인터넷광고

정당 및 후보자가 법 제82조의7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제93조 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 투표지 촬영 인증샷 게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56(각종 제한규정위반죄)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_ 02-522-7284 팩스 _ 02-522-7284